

발송번호: 9-5-2022-052936173

발송일자: 2022.07.15.

제출기일: 2022.09.15.

##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 원 인 성 명 주식회사 쏘스뮤직 (특허고객번호: 120150043853)

주 소

대 리 인 명 칭 제일특허법인(유)

주 소

지정된변리사 김창세 외 1명

출 원 번 호 40-2021-0050519

상 품 류 제 3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

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

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### 거 절 이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1.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2.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 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GFRIEND

[ 거절이유1 ]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

이 출원상표 'GFRIEND'는 대한민국의 6인조 여성 가수 그룹 명칭인 '여자친구'의 영문 명칭인 'GFRIEND'와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(또는 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: 그 타인이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○ 지정상품 : 전부

[ 거절이유 2 ]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6인조 여성 가수 그룹 명칭인 '여자친구'의 영문 명칭인 'GFRIEND' 과 동일한 표장으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○지정상품: 전부. 끝.

2022.07.15.

**특허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표디자인심사국**

**심사관    안선희** \_\_\_\_\_

1.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·유사 여부는 유사상품 심사기준(특허청 예규)을 참고하여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.
  2. 타인의 선출원·선등록 상표의 상세한 내용은 「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(<http://www.kipris.or.kr/>)」에서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- ※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,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☎042-481-5839(담당심사관 안선희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특허로([www.patent.go.kr](http://www.patent.go.kr)) 또는 특허청([www.kipo.go.kr](http://www.kipo.go.kr))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상황,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 
(특허청)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문산동, 정부대전청사)